

당 헌

[제정 2021.12.19.]

[개정 2021.12.24.]

[개정 2022.03.2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새로운물결’ 이라 하고, 약칭은 ‘새물결’ 이라 한다.<개정 2021.12.24.>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시대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당의 강령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당의 민주적 운영과 활동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과 운영) ①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각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②새로운물결은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시민 중심의 정당을 지향하되, 국민들과 폭넓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네트워크정당, 플랫폼 정당, 개방형 정당을 지향한다.

③새로운물결은 정당 구성원 상호 간의 존중과 중앙당 및 시·도당의 분권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제2장 당원 및 회원

제4조(자격)①정당법에 따라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의 정강·정책

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으며, 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하고 권리당원 중 일정 조건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직을 수행하는 자를 평생당원으로 한다.

②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에서 정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입당원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할 수 있다), 전화번호, 주소 및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당·탈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심사 및 판정
2.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심사 및 판정

④입당·탈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무는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처리한다. 단,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당원자격심사를 받은 자로서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당원자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전항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⑦입당 및 탈당의 절차와 방법은 모바일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⑧청소년의 정치권리 증진과 정치활동 보장 등을 위해 정당법상 당원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당원제를 운영한다.

⑨기타 당원자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

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 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당원소환의 청구요건, 소환 대상자의 범위, 소환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8. 당의 정책 입안이나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9.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③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당원의 권리행사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당규로 정한다.

⑤합당과 해산에 대해서는 권리당원의 토론과 투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당비) 당원은 당규에 따른 당비 납부 등의 의무를 진다. 당비 납부 여부,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① 당은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모든 선출직 당직,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성별 세대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한다.

제8조(재외국민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재외국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재외국민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당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포상과 징계)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대의기구

제1절 전당원투표

제11조(전당원투표)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전국당원대표자 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전당원투표

②전당원투표에 관한 방법, 절차 등의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여부를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2.03.21.>

제2절 전국당원대표자 대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당원대표자 대회(이하 전당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전당대회는 중앙대의원과 당원 총수 1% 내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전당대회 관련 필요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전당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⑤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권한) ①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의결
4.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중앙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소집) ①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전당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기타 전당대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중앙위원회는 전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16조(지위와 구성) ①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2.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3. 고문단
4. 사무총장
5. 중앙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6.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7. 윤리위원회 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정책연구소장
8. 대변인단
9. 시·도당위원장
10. 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11. 지역위원장

12. 중앙당 당직자 및 사무직 당직자, 시·도당 사무처장

③위 제2항 제12호 중앙당 당직자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각급 위원회(급) 위원(급) 이상의 정무직 당직자. 당대표가 임명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임한 정무직 당직자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해당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중앙당, 정책연구소 및 국회직 등의 사무직 당직자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중앙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으며 부의장 2명을 둔다.

제17조(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2.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3. 당헌 개정안의 발의

4.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5. 당규의 제정과 개정

6. 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7.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8. 전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9. 임시전당대회 소집 요구

10.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11. 정당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당 창당의 승인 및 정당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개정 2021.12.24.>

제18조(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중앙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기타 중앙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당대표

제19조(당대표) ①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당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최다득표 1순위는 당대표, 2순위부터 4순위까지를 최고위원으로 정한다.

1.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 일반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③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궐위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 궐위 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득표자 순으로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정한다. 최고득표자 순으로 당대표 지정을 할 수 없는 동수 혹은 찬반투표 선출자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정한다.

2. 당대표 궐위 시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 단,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 당대표 권한대행이 다음 당대표 선출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3.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난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자 중 선출 득표수를 고려하여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단, 궐위된 최고위원의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위 각 호에 따라 선출한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당 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면
3.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4.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⑤당대표는 매년 당 운영계획과 핵심정책을 발표한다.

⑥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⑦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최고위원회

제20조(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최고위원회는 당무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최고 책임기관이다.

②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선출직 최고위원 3명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위원장
5. 청년최고위원 1명 (선출된 전국 청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6.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③제22조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 중 여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당대표는 제2항 제6호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을 여성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④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제21조(최고위원회의 권한) ①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주요 당무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2.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3. 중앙위원회와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4. 주요 당직자 임면에 대한 협의
 5. 윤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
 6. 공직선거후보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의 추천, 승인에 관한 의결
 7.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
 8.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9. 전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 ②최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전국위원회

제22조(전국위원회) ①대한민국의 각 사회적 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당의 정책적 역량을 제고하여 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각 부문 전국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전국위원회는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시니어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
4. 전국장애인위원회
5. 전국직능위원회
6. 전국대학생위원회

④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직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여성 최고위원이 그 직을 겸한다. 다만, 제20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는 당대표가 지명한 여성 최고위원이 그 직을 겸한다.

⑤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인 당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여 선출하되, 선출의 구체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⑥ 전국시니어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직능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⑦ 전국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하여 당에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할 수 있다.

⑧ 당대표는 당세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항 각 호 이외의 전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⑨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3조(중앙당 상설위원회) ① 중앙당에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인권위원회
2. 인재영입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국방안보위원회
5. 외교통일위원회
6. 대외협력위원회
7. 재외국민위원회
8. 사회적경제위원회
9. 법률위원회
10. 농어민위원회
11. 노동위원회
12. 지방자치분권위원회
13. 다문화행복위원회
14. 디지털플랫폼정당위원회

15. 공공개혁위원회
16. 기득권깨기위원회
17.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18. 제7공화국위원회
19. 기회공화국위원회

- ②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③당무 운영 상 필요한 경우 당대표는 제1항의 상설위원회 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각 상설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특별위원회) 당대표는 특정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절 당무집행기구

제25조(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제26조(당무집행기구) ①중앙사무처에 중앙 및 시·도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두며, 그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 ②당대표 직속으로 수석대변인과 대변인을 둔다.
- ③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 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 ④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무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당무집행기구의 구성,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인사위원회) ①사무처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무처당직자의 복무 및 임면절차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정치연수원

제28조(정치연수원) ①당원 및 지지자의 정치역량 함양과 예비정치인 양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을 위하여 정치연수원을 둔다.

②정치연수원에 원장 1명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두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당은 매년 정치 연수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공직후보자 추천과 당직자 인사 시 연수 평가의 결과를 반영한다.

④정치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29조(지위 및 구성) 의원총회는 중앙위원회의 직속 원내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0조(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의 심의 및 의결
6.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 및 의결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개정 2021.12.24.>
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31조(소집 및 운영) ①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단,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소집한다.

②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개정 2021.12.24.>

③의원총회 운영 및 의결 방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2절 원내대표

제32조(지위) ①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원내 업무를 총괄한다.

②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제33조(선출 및 임기) ①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된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의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당대표의 요구나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
3.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청
4.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5조(원내부대표)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 및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제36조(원내대책회의) ①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 전반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 를 개최한다.

②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정 하는 10인 내외의 부대표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37조 (원내활동 지원) 원내활동에 대한 당의 각종 입법, 정책 활동의 기획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38조(지위와 구성) ①당의 정책을 입안 및 심의하고 정책 현안 대응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의장과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4.>

제39조(기능과 권한) ①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 법률안, 예산안 등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정책협의 또는 검토업무
4. 정책 민원업무의 처리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 제1호, 제4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과물은 원내대책회의의 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4.>

제40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는 의장과 정책조정을 위한 수석부의장 및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둔다.

②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책위원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3. 당·정협의 업무총괄·조정
4.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

원의 추천

③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④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24.>

제6장 시·도당

제1절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

제41조(시·도당대회의 구성) ①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 당원 대표자대회(이하 “시·도당대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7.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9.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0.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당원

②시·도당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기능과 권한) ①시·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위원장 선출
 2. 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3. 시·도당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4.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처리
 5. 시·도당규약제정. 다만, 당헌·당규와의 충돌여부가 문제될 경우 중앙당 법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6.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 ②시·도당대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43조(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수임 및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7.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8.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9. 수석부위원장
10. 시·도당 사무처장

②시·도당 운영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기능과 권한)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의 심의·처리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처리

3. 시·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시·도당 윤리위원회 및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의결
5. 중앙당이 위임한 사항
6.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7. 기타 시·도당의 당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절 시·도당 위원장과 집행기구

- 제45조(위원장)** ①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 ②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③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④시·도당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6조(사무처 등)** ①시·도당에 사무처를 둔다.
- ②시·도당에 상설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 ③시·도당 사무처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절 지역위원회

- 제47조(지역위원회)** ①지역위원회는 지역 당원들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다.
- ②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

거구가 2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한다.

제7장 정책연구소

제48조 ①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시민교육 및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③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장 중앙당후원회

제49조 ①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당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장 독립기구

제1절 윤리위원회

제50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당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51조(구성과 임기) ①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②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③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중앙당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①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의 윤리규범 제정과 개정,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당원과 당외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당원의 징계와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신고의 처리 등
5.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6. 시·도당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7. 징계에 대한 재심

8. 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권한

②중앙당윤리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7호에 따른 중앙당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53조(시·도당윤리위원회의 권한) 시·도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과 당외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다만, 당무위원 및 중앙당 소속 당직자의 징계는 제외한다.

3.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제2절 당무감사위원회

제54조(당무감사위원회) ①당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해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당무감사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당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당무감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9명의 당무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④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 제55조(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①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중앙당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활동을 평가한다.
- ③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공직후보자의 선출

제1절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의 설치

- 제56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⑤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⑥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각급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57조(후보자 추천원칙) ①당은 당의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되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경선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③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과 관련한 당헌·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선거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한다.

②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92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9조(대통령후보자의 지위) ①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후보자는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0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비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비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후보자 추천기준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시·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③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④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도당이 관장하되 제68조 및 제69조 제2항을 준용하며, 최종 추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 ①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정치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 시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선거대책기구

제65조(선거기획단) ①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선거대책기구) ①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무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③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재정

제67조(구성) ①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 대표가 정한다.

⑤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8조(예산과 결산) ①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며,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개정 2021.12.24.>

⑤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당헌 개정 등

제69조(발의)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로 발의된다.

제70조(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 발의가 있을 경우 중앙위원회 의장 또는 전당대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중앙위원회 또는 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1조(당규의 제정 등) ①당의 각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당의 각급 집행기관·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2.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3. 재적 중앙위원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④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13장 보칙

제72조 (합당과 해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 또는

전당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3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정당법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에 따라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으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방식을 통하여서는 의결할 수 있다.

제74조(비상대책기구) ①제19조 제3항을 집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중앙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④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5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법정부채과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채과 정

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법정부채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4.>

부 칙 <2021.12.19.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1년 12월 19일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초대 당대표, 최고위원 등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특례)①초대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은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③창당 후 선출된 첫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창당 후 청년위원장은 제22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조(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①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5조(중앙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 ①제18조제2항,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다.<개정 2021.12.24.>

②중앙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개정 2021.12.24.>

제6조(2022년3월 재보궐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3월 9일 재보궐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규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②2022년 3월 9일 재보궐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공직후보자 선출은 중앙당에서 관장할 수 있다.

제7조(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특례) 제5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창당이후 첫 대통령후보자는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직을 겸할 수 있다.